

# 서울특별시감사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930
----------	-----

2009년 7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6월 22일 도인수 의원외 15명
- 나. 회부일자 : 2009년 6월 25일
- 다. 상정일자 : 제12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09년 6월 29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인수 의원)

#### 제안이유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한 3명은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위원의 자격을 비상임위원으로 규정된 것을 위원으로 조정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 : 입법예고(2008. 8.20 ~ 8.25) 결과 의견없음.
  - (3) 규제심사 대상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 박용훈)

#### □ 검토요지

##### 가.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의 추천대상 명획화(안 제3조제1항제1호)

현 행	개 정 안
<p><u>안 제3조제1항제1호 위원 중 9인은 법조인·공인회계사·기술사·감사전문가·언론인·교수 및 서울특별시의회의원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되 그 중 3인은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u></p>	<p><u>안 제3조제1항제1호 위원 중 9명은 법조인·공인회계사·기술사·감사전문가·언론인·교수 및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한 3명은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u></p>

- 감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브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음.
-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함께 총 12명으로 구성되는 바, 서울시 공무원 3명을 제외한 9명은 법조인·공인회계사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음.

##### <감사자문위원회 주요 기능>

-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감사운영에 관한 사항
- ② 부조리유발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③ 주민·시민 감사청구심의회 기능 및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위원회의 구성 취지에 따라 다양한 전문가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위원 중 3명에 대한 추천권을 부여하였는 바, 2000년 이후 의장이 추천한 감사자문위원을 보면 2000년 2월부터 2002년 2월까지는 의원 1명과 외부 전문가 2명을 추천하였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의원 2명과 외부전문가 1명을 추천하였음.

##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 추천 현황(2000년 이후)>

- 시의원 : ① 한준자 ⇒ ② 한준자, 김주철 ⇒ ③ 이일희, 신기철 ⇒ ④ 신기철, 김기성 ⇒ ⑤ 안희옥, 오신환 ⇒ ⑥ 안희옥(07.02.15~현재), 도인수(08.12.09~현재)
  - 전문가(직업, 임기)
    - ① 박00(법학교수, '00.2.12~'02.02.11), 한00(변호사, '00.2.12~'02.02.11) ⇒
    - ② 송00(회계사, '02.02.12~'04.02.11) ⇒ ③ 임00(세무사, '04.03.23~'08.03.22; 1차 연임)
- ※ 의장 추천 대상자인 임00위원은 시장이 1차 연임 결정한 바, '09년 8월 임기만료하는 김00위원 후임으로 의장 추천을 받아 위촉할 예정임.

- 본 개정안은 의장의 추천대상자로서 관례적으로 의원 중에서 2명을 감사자문위원으로 추천한 것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임.

### 나. 조문의 명확화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

- 본 조례개정안은 「감사자문위원회조례」의 제명 띄워 쓰기를 비롯한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에 의한 조문의 정비를 포함하고 있는 바,
-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을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고자 하는 것과
- 현행 규정상 ‘재적의원’을 ‘재적위원’으로 바꾸는 등 잘못된 용어를 바로 잡는 개정내용과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의 조문 정비 및 정리 사항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재석 8명, 전원일치)
7.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감사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감사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감사자문위원회조례”를 “서울특별시 감사자문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장”으로, “서울특별시감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감사자문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각 1인을 포함한 12인의”를 “각 1명을 포함한 12명의”로 하고, “비상임위원”을 “위원”으로 하며,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위원 중 9인”은 “위원 중 9명”으로 하고, “그 중 3인은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한 3명은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한다”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재적의원”을 “재적위원”으로 하고, “출석의원”을 “출석위원”으로 한다.

제11조 후단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감사자문위원회조례</u>	<u>서울특별시 감사자문위원회 조례</u>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자체 감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보완하고 감 사행정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며 감사 운영에 관한 <u>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u> <u>이라 한다)</u> 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두는 <u>서울특별시감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u> <u>라 한다)</u> 의 구성·기능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 ----- <u>서울특별시장</u> ----- ----- -- <u>서울특별시 감사자문위원회</u> ----- ----- -----
제2조 (기능) ① <u>위원회</u> 는 다음 각호의 사 항을 심의한다. 1.~ 3. (생략) 4. 기타 <u>시장</u> 이 부의하는 사항 ② (생략)	제2조 (기능) ① <u>서울특별시 감사자문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3. (현행과 같음) 4. 기타 <u>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이 부의하는 사항 ② (현행과 같음)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 원장 <u>각 1인을 포함한 12인의 비상임</u> <u>위원</u> 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다. 1. <u>위원 중 9인은</u> 법조인·공인회계사·기술 사·감사전문가·언론인·교수 및 서울특별 시의회의원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중에 서 위촉하되 그 중 3인은 서울특별시의 회의 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2.. (생략) ②(생략)	제3조 (구성) ① ----- ----- <u>각 1명을 포함한 12명의 위원</u> ----- <u>각 호의</u> ----- 1. <u>위원 중 9명은</u> ----- ----- ----- <u>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u> <u>을 포함한 3명은 서울특별시의회의 의</u> <u>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u>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생략).  
②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①(생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생략)

제11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안건심의, 기타 정책건의와 관련하여 조사·연구 자료 수집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

제6조 (회의) ①(현행과 같음)  
②----- 재적위원 -----  
----- 출석위원 -----  
-----  
③(현행과 같음)

제11조 (위원의 수당 등) -----  
-----  
-----  
-----  
----- 드는 -----  
-----